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573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691호

시행일자 2017. 2. 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고시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5호(2017. 1. 31)
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3호, 2017.1.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개정 사항

○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, 심장재활 등 급여기준 신설
○ 통증자가조절법, 인공요도괄약근 급여기준 초과시 본인부담완화 등 개선
○ 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) 유전자패널검사 급여기준 신설
○ 결핵검사(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-감마) 급여기준 확대
○ 인공와우 급여연령 확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

□ 시행일 : 2017.2.1.부터(NGS 유전자패널검사는 3.1.부터)

(대의협 제813-1691호) 시행일자 2017. 2. 1

□ 문의사항 연락처

* 결핵검사, MMP-9, 인공와우, 운동점차단술, 동종건조양막치료 : 044-202-2737

*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: 044-202-2746

붙임: 1. 고시개정문 1부,
2. PCA 선별급여 전환 관련 치료재료 목록 1부,
3.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